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제한을 5년으로 규정하여 중복지원 검증을 강화(안 제24조제3항제1호)
- 나.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·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(안 제25조제2항, 안 별표 1)
- 다. 지원 단지의 선정·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(안 제25조제4항, 제5항)
- 라.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연임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기능 강화(안 제27조제3항, 제4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10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옥상 방수

제2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,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1.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. 다만,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제26조”를 “별표 1의 공동주택 시설지원 심사표에 의거 제2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통지”를 “통지하고, 지원단지 선정·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지원사업의 선정·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·검토 절차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”를 “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”로, “담당과장으로 한다”를 “담당국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제출”을 “제출하고,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,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계약·정산서류를 대조·검토하여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공동주택 시설지원 심사표

분야	평가부문	평가항목	배점	특점
정량 평가 (부서 평가) 80점	준공연수(10)	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■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	10 8 6 4 2	
	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(10)	■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100% ■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70% 이상 ■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50% 이상 ■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30% 이상 ■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30% 미만	10 8 6 4 2	
	단지 규모(10)	■ 150세대 미만 ■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■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■ 1,000세대 이상	10 8 6 4 2	
	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(10)	■ 최초 지원 ■ 20년 이상 경과 ■ 15년 경과 20년 미만 ■ 10년 경과 15년 미만 ■ 5년 경과 10년 미만	10 8 6 4 2	
	보조금 지원 횟수(10)	■ 최초 지원 ■ 1회 지원 ■ 2회 지원 ■ 3회 지원 ■ 4회 이상 지원	10 8 6 4 2	
	관리 투명성(15)	■ 내·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	각각 여 5 부 0	
	시책이행(15)	■ 경상북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■ 지자체 시책(에너지절약, 재활용품, 음식물폐기물 등) 이행 ■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	각각 여 5 부 0	
정성 평가 (심사 위원) 20점	긴급성(10)	■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·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	상 10 중 6 하 2	
	효과성 및 필요성(10)	■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, 주민 편의성 등 ■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,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	상 10 중 6 하 2	
가점		■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, 우수(모범)단지 선정	+5이내	
감점		■ 5년간 내·외부 감사 지적, 지원사업 부실 사례	-5이내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지원범위 및 대상) ① (생략)	제24조(지원범위 및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(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2. 옥상 방수</u>
<u>12. (생략)</u>	<u>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u>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.
<u>1.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</u>	<u>1.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. 다만,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2. 3년 이내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</u>	<u><삭제></u>
<u>3. 4. (생략)</u>	<u>2.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</u>

5. (생 략) 제25조(지원신청 및 교부결정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 사를 실시한 후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 여야 한다. ③ (생 략)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 설> 제2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 략)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	같음) 4. (현행 제5호와 같음) 제25조(지원신청 및 교부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별표 1의 공동 주택 시설지원 심사표에 의거 제26조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 통지하고, 지원단지 선정 · 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--- -----. ⑤ 지원사업의 선정 ·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· 검토 절차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 의10을 준용한다. 제2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-----
---	---

며,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구미시의회의원의 경우 임기종료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다만, 구미시의회의원의 경우 임기종료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29조(정산보고)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
며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
있다. -----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정산보고) ① -----

----- 제출하
고,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-----

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

<신 설>

며,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
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
을 대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
확인 및 계약·정산서류를 대조
·검토하여 사업완료를 확인한
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32조의10(이의신청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조건, 교부결정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,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소 관 부 서		공동주택과
입 안 자	과 장	김 상 기
	담 당	박 호 덕 (480-2881)